

교육성과관리센터 규정

□ 제정 : 2017. 05. 01

□ 개정 : 2018. 04. 01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교육 전반의 성과분석 및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센터는 교육혁신처에 소속된다.

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성과관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고,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센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임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3조(업무) 센터는 교양 및 전공 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육 성과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
2. 대학교육 성과평가 및 질 관리 업무
3. 대학교육 성과 데이터의 통계분석 및 데이터의 총괄관리
4.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육성과 평가인증 및 관리
5.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, 분석 및 관리
6. 강의평가 연구 분석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업무
7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성과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의 임기는 센터장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교육혁신처 소속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5조(운영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성과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2.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하며,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